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5. 25. 선고 2020고단 1062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강요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광 주 지 방 법 원 목 포 지 원

판 결

사건 2020고단106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미수,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이거량(기소), 김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건아(국선)

판결선고 2021.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아동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시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3. 4. 03:12경부터 같은 날 14:04경까지 전남 무안군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1세)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욕했지. 자살하겠다. 유서의 너의 이름을 쓰고 네가 죽으라고 했다는 내용으로지어내겠다.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 콘돔은 안 껴도 되지, 지금 입고 있는 팬티를 사진을 찍어 보내라. 자위라 도 해서 신음소리라도 들려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계속하여 '팬티 안 보여주면 유서를 쓰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 3. 4. 15:00경 부천터미널로 나와 같이 성관계를 하자. 콘돔은 안 끼고하겠다. 안 나오면 죽어버리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1. 소년환경조사서
-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행위의 점)
-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 신매체이용음란의 점)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1]

-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요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나 피고인의 신체 사진이 실제로 전송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불우한 성장기를 거쳤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으며,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강지성

미주

[1] 1) 검사는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판시 각 죄는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범한 것이어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판단은 공소장변경 없이 가능하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